글.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
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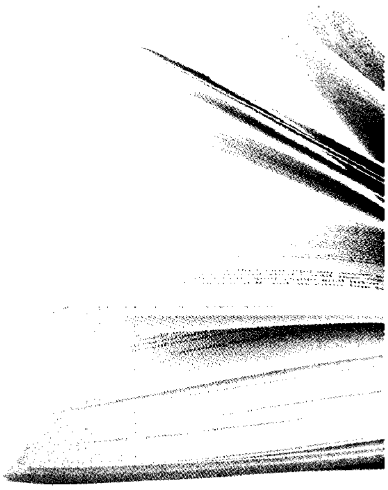

새 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염인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,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못하도록 하였으며,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.
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·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·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08년 3월 감염인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, HIV익명검진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.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염인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,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못하도록 하였으며,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.

감염인 인권 침해 요소 개선

감염인의 사생활을 배제한 신고 · 보고, 강제처분 정책을 대폭 개선하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인이 입원 · 퇴원 · 사망한 경우 신고하도록 했던 것을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고, 시 · 도지사의 감염인 명부작성 · 비치의무를 삭제하였으며, 감염인이 주소를 이전하거나 사망한 경우 감염인 또는 세대주에게 부과했던 신고의무를 폐지하였다. 또한 감염인이 치료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두 강제처분 대상이었으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 감염인에 대한 지나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였다.

익명 검사제도화 및 비밀유지 강화

특히 검사를 꺼려하는 고 위험군 및 잠재위험군의 자발적 검진유도를 위해 그간 보건소와 검진상담소 중심으로 운영하던 익명검사 제도를 일반 의료기관에도 도입하였다. 이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 피검진자에게 익명검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들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한다. 아울러 익명과 실명검사 모두 개인의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검진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.

법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

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근로관계에서 감염인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대우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그간 보건소 및 검진상담소의 의료기관에서 확진된 감염인은 모두 실명으로 등록되었으나, 의료기관에도 익명검사 제도를 도입하므로, 신분노출 우려로 인한 검진기피 현상이 최소화되어 검진율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.

새 예방법 개정사항 홍보 방안

법령 개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, 대한감염학회 등 관련학회 및 보건기관 담당자에게 개정 법률에 대한 교육 · 홍보를 실시하고, 2009년 상반기에도 보건기관의 에이즈 담당자 교육을 추가 실시하여 감염인이 최대한의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.

아울러 감염인의 보호 · 지원에 대한 근거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신고율 향상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익명검사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교육 ·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.